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개정에 맞게 정비 및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규정 삭제(안 제28조)

-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의무, 옥외 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비치의무가 폐지되어, 상위 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

○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정비(안 제29조)

-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0조 제2항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, 관련 조례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19. ~ 2018. 11. 8.)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7632(2018. 10. 17.)〕
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8107(2018. 10. 15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써

○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 시 등록증 반납사항과 사업자의 비치장부 및 서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 면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